

2025년 친환경농업 인증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

2025년 친환경농업 인증비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5월 30일
아 산 시 장

1. 신청기간 : 2025. 6. 2. ~ 6. 30.

2. 신청방법

- 신청 장소 : 농지소재지 읍·면·동사무소(행정복지센터)
- 신청 농지가 동일 시·군 내의 2개 이상 읍·면·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·면·동에 신청서 제출
 - 신청 농지가 시·군를 달리하는 경우 각각의 농지 소재지 읍·면·동에 신청서 제출
- 지급신청은 농가, 생산자 단체의 대표자가 신청(주소지중심 신청)하며, 신청서 및 필요서류* 등을 작성하여 신청
 - 생산자단체 명의 공동 신청의 경우 구성원의 신청 세부현황을 작성하여 신청

3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농가(경영체)당 지급한도 면적: 0.1~5.0ha
 - 생산자단체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신청 면적 합이 5ha를 초과할 수 있음. 이 때 각 구성원의 지급한도는 5ha를 초과할 수 없음
- * 예시) 법인에 소속된 개별 생산자 A(7ha), B(6ha), C(4ha)의 경우 법인 대표가 14ha를 신청, A, B, C는 각각 5ha, 5ha, 4ha에 대한 지원금 수령

○ 지급단가(단위: 천원/ha) * '25년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단가 인상과 별개

인증단계	논	밭	
		과수	채소·특작·기타
무농약	250	600	550
유기지속	175	350	325

* 재배작목과 관계없이 논·밭 구분은 공부상 지목(단, 기본형공익직불제 논으로 지원받은 농지는 논단가로 지급)

4. 사업대상자

-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“친환경농어업법”이라 한다)」 제19조,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·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도내 농업인·임업인 및 법인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·임업인 및 법인

5. 지원자격 및 요건

- 도내 주소지를 두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중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지원횟수*가 초과되어 국비 지급이 제외된 무농약 인증농가 및 유기농업지속직불금(국비) 지급 농가

* 무농약 : 3회, 유기농 : 5회(무농약3 + 유기2)

※ 횟수제한 외 인증포기 및 인증취소 등의 지급 제외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 불가

6. 지원대상

- 지원대상 농산물: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“친환경농산물” 일체

○ 대상농지

- 무농약 인증을 받은 필지 중 지원횟수(3회) 경과로 친환경직불금(국비)을 수령하지 못하는 필지
- 유기농 인증을 받은 필지 중 유기인증 지원횟수(3+2회) 경과로 2024년 ‘유기농업지속직불금’을 수령하는 필지

*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어업법 제24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

농지 등과 인증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

< 지급대상 제외 농지 >

- ▶ 사업기간 중 인증 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소된 농지
- ▶ 토양이 아닌 인공적으로 조성된 배지나 재배용기·장치 등에서 생산하는 수경·양액재배, 버섯재배, 또는 이에 준하는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등(다만, 토양을 관리하면서 종균을 나무에 접종하여 버섯을 재배하는데 이용되는 농지 등은 포함)
- ▶ 산림 등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(식재 후 상당 기간이 경과 되어 외관상 자생하는 것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식물을 포함함)을 굴취·채취하는데 이용되는 농지등
- ▶ 정상적인 경작 및 관리 흔적이 없는 농지, 인증 품목이 아닌 수목, 풀 등과 혼재되어 외관상 작물재배지로 식별할 수 없는 농지 등
- ▶ 인증면적을 초과하는 농지 등

7.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

가. 제출서류

- (개인) 친환경농업 인증비를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 및 첨부 서류(필요시)를 갖추어 관할 읍·면·동에 신청서 제출

- * 신청서류: ① 친환경농업 인증비 지원사업 신청서[별지 제1호 서식]
② 친환경농산물인증서(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 조회로 대체 가능)

- (생산자단체) 단체인증을 받은 생산자단체의 경우 구성원의 신청내역을 종합하여 단체 명의로 공동 신청 가능

- * 신청서류: ①, ②와 신청인 정보, 입금계좌, 인증종류, 품목, 농지 소재지, 재배면적이 포함된 신청 세부현황

나. 제출방법 : 신청서 및 친환경인증서를 지참하여 농지소재지 읍·면·동사무소에 제출